

### 납품대금 연동제, 이런 점이 궁금해요

## 01 기성품 구매도 납품대금 연동제의 대상에 해당되나요?

위탁자의 요청으로 제작하여 납품을 하는 거래라면 제조위탁에 해당되나 규격화, 표준 화된 제품을 납품하는 경우 단순구매로 수· 위탁거래에 해당되지 않아, 납품대금 연동제 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02 무엇이 주요 원재료인가요?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중 그 비용이 납품대금에서 10% 이상 차지하는 원재료를 말합니다. 주요 원재료가 복수인 경우 모두 연동제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 03 연동 약정서 작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 표준약정서 및 가이드 북을 배포하고 있으며, 연동 약정 체결이 생소한 기업들을 위해 연동제 누리집 내 '약정서 작성 하기' 메뉴를 통해 약정서 작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납품대금 연동제 누리집(납품대 금연동제.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04 |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고시하는 가격지표가 없거나, 활용하기 부적절한 경우는?

① 위탁기업이 원재료의 판매처와 직접 협상한 가격 또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판매한 가격, ② 원재료의 판매처가 수탁기업에게 판매한 원재료의 단위 당 가격으로서 위탁기업이 확인할 수 있는 가격, ③ 그 밖에 약정서, 원가내역서, 견적서 등을 바탕으로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가격 등과 같은 가격정보를 기준지표로 정할 수 있습니다.

### 05 약정서에 연동 조항을 기재하지 않고 발급한 경우는?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위탁기업이 연동제 주요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약정서를 발급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연동 조항 미기재 발급에 따른 개선요구,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를 위탁기업에 부과합니다.

### 06 위탁기업이 연동하지 않기 위해 합의를 유도· 회유하거나 쪼개기 계약 등을 하는 경우는?

연동제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는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5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방 중기청의 분쟁조정 및 중기부의 직권조사가 실시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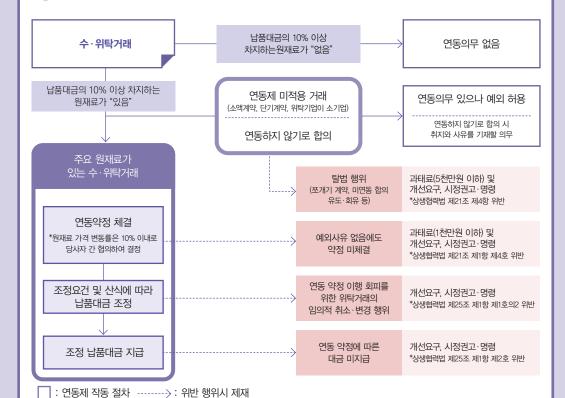
\* 탈법행위: 위탁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제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







# 을 \_ 납품대금 연동제 흐름도



## (DE)

## -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모집 안내

### ▶납품대금 연동제 상담 지원단

담당기관	전화번호	담당기관	전화번호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1 02–798–9831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2-210-0031~2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1-831-1357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3-260-1625~6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70~2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3-230-5307~8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39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1-415-0623, 041-564-3862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1-201-6868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3-210-6436~8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2-450-1148~1150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5-268-2546~8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02-368-8969, 8470
			,

###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상담 및 접수

구분	기관명	연락처	
공고내용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	044–204–7905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85	
신청접수 및 참여확인서 문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납품대금연동확산지원TF		02–368–8969	

# '따뜻한 연대'의 실천

# 날품대금 연통제 통행기업 모집

납품대금 연동제를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23년 10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을 위한

납품대금 연동제를 먼저 실천하는 **'동행기업'**의





### 동행기업이란 무엇인가요?



- 새롭게 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실천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과 동행하는 기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 연동제 법안이 윤석열 정부의 '약자와의 동행 1호 법안'이라는 의미를 반영하여 '22년 9월부터 상시 모집하던 연동제 시범운영을 '동행기업' 으로 명칭 변경하고 새롭게 추진

### 동행기업은 왜 모집하나요?



•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23.10.4)에 앞서, 인센티브 지원과 연동제의 자율적 참여 촉진을 통해 납품대금 연동제의 빠른 현장 안착을 유도하여, 제도의 미숙지로 인한 시행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함께 모집합니다.

### 동행기업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 「상생협력법」 제2조에서 정한 위탁기업 또는 「하도급법」 제2조 에서 정한 원사업자 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 납품대금 연동제 누리집(납품대금연동제.kr) 또는 이메일 (med@win-win.or.kr)을 통해 '23.12.31일까지 신청 가능 합니다.
- 연동제 누리집 內 '동행기업 참여 추천' 메뉴를 통해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을 동행기업으로 참여 추천도 가능합니다

### 동행기업에 참여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동행기업으로 참여하는 위탁기업 또는 원사업자는 중소벤처 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3개 부처 16개 인센 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우대혜택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 납품대금 연동제가 생소한 기업도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납품 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특별약정서 가이드북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 동행기업 중 연동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추가 인센 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동행기업 참여시 우대혜택 (위탁기업에 제공)

	* '동행기업 참여확인서' 및 '연동실적 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기관에 제출				
공통 (7)	<ul><li>● 정부포상(동반성장유공) 우대평가</li><li>-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생협력 우수기업 및 상생협력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 심의 시 우대</li></ul>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과 (☎044-204-7912)			
	<ul><li>②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5점)</li><li>─ 중소·중견기업 제조혁신으로 기업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등을 지원</li></ul>	중기부 제조혁신과 (☎044-204-7262, 7253)			
	<ul><li>❸ 의무고발요청 여부 심의시 법 위반점수 감경(최대 -0.15점)</li><li>- 의무고발요청 심의 시 상생노력에 반영(연동 실적, 수탁기업 수 등 고려)</li></ul>	중기부 불공정거래개선과 (☎044-204-7907)			
	<ul> <li>✔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에 연동 실적 반영(5점)</li> <li>- 원사업자가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체결한 연동계약 건수의 비율에 따라 차등하여 최대 1점 가점</li> <li>- 하도급대금 증액비율에 따라 차등하여 최대 3점 가점</li> <li>- 연동계약 확산을 위해 사내 정책 또는 제도 운영 여부에 따라 최대 1점 가점</li> </ul>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85)			
	<ul> <li>★ 하도급법 벌점 경감 사유로 인정(최대 3.5점)</li> <li>원사업자가 해당 연동계약을 체결한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1점, 원사업자가 해당 연동계약을 체결한 비율이 10% 이상 50% 미만인 경우: 0.5점</li> </ul>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85)			
	<ul><li>❸ 공정거래 업무 유공 포상 추천</li><li>− 연동제 동행기업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중 일부를 공정거래업무 유공자로 추천('24년부터 적용)</li></ul>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85)			
	<ul><li>⑦ 연동제 실시 위탁기업에 금리감면, 특별지원자금 공급(1조원, 산업은행)</li><li>* 금리감면 : 대기업 최대 0.3%p, 중견·중소기업 최대 0.7%p</li></ul>	금융위 산업금융과 (☎02-2100-2865)			
중소 기업 (7)	① 정책자금 최대 대출한도 확대 -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 잔액과 신규대출 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60억원 이내에서 운용 → (인센티브 적용 시)100억원 이내에서 운용	중기부 기업금융과 (☎044-204-7524) 중진공 정책자금 전담콜센터 (☎1811-3655)			
	<ul> <li>◆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기보 보증우대</li> <li>- 수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수출실적이 당기매출액의 10% 이상인 기술혁신선도형 기업 등 '수출중소기업 보증 프로그램 지원대상'인 경우 보증료 0.4%p 감면, 보증비율 95% 적용</li> </ul>	중기부 벤처정책과 (☎044-204-7703) 기술보증기금 고객센터 (☎1544-1120)			
	<ul><li>◆ 수출컨소시엄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가점(2점)</li><li>− 전문업종별(품목별) 중소기업 수출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외전시회 또는 현지 수출상담회 단체 참가시 해외마케팅 활동 관련 비용 지원</li></ul>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과 (☎044-204-7502)			
	<ul><li>◆ 해외규격인증지원사업 선정시 가점(5점)</li><li>- 수출대상 국가에서 요구하는 CE, NMPA, NRTL 등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 등을 지원</li></ul>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과 (☎044-204-7506)			
	<ul><li>◆ 수출바우처사업 가점 부여(1점)</li><li>- 수출 유망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하고,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을 활용하여 수출지원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비용을 정산하여 지원</li></ul>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과 (☎044-204-7504)			
	<ul><li>❸ 병역지정업체 추천 평가시 가점</li><li>병역지정업체 신규 신청업체 평가 시 우대</li></ul>	중기부 인력정책과 (☎044-204-7797)			
	<ul><li>♪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시 가점 부여</li><li>중소기업인 원사업자 중 일정요건을 갖춘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평가시 가점 부여</li></ul>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85)			
대기업 (2)	<ul> <li>● 동반성장 대기업 실적평가지표인 '납품단가 조정' 항목에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및 '운영 실적' 추가</li> <li>* 제조업·식품·가맹점·통신·정보서비스: 최대3점, 건설·홈쇼핑·도소매·백화점·플랫폼·광고: 최대4점</li> </ul>	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평가부 (☎02-368-8447)			
	<ul> <li>② (중견기업 포함)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사업 주관기업 선정시 가점(1점)</li> <li>-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 등 산업 선도기업의 인프라·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및 시장개척 지원</li> </ul>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과 (☎044-204-7502)			

### - 납품대금 연동제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공사·가공·수리, 판매, 용역 등을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여 수탁기업에 발급하고 그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상생협력법 제21조제1항제4호)

적용대싱

위탁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공기업 등

수탁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위탁을 받는 매출액 3천억원 미만)



### -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23년 10월 4일)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은?-

납품대금의 10%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가 있는 모든 수·위탁거래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할 의무가 부여됩니다. 시행일 이후 최초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과 물품등의 제조·공사· 가공·수리·용역 등 위탁에 관한 약정을 체결·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소액 계약, 단기 계약, 위탁 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양 당사자가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명시적으로 기재

### ·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에 따라 약정서에 기재할 사항은?

01 물품등의 명칭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등을 위탁한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명칭

(예시) 동 케이블, Wire Rope

02 주요 원재료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이상인 원재료

\* 원재료: 원료와 재료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가공물, 중간재를 포함

(예시) 동 케이블에 사용되는 "동", Wire Rope에 사용되는 "경강선재"

기준지표 03

'주요 원재료'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지표

(예시) 런던금속거래소(LME, London Metal Exchange), 한국은행(bok.or.kr), e-나라지표

(index.go.kr), 조달청(pps.go.kr), 산업통상자원부(motie.go.kr),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가격조사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고시하는 지표

조정요건

납품대금 연동을 시행하는 요건(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변동률 등). 단, 변동률의 범위는 위탁 기업과 수탁기업이 0~±10%이내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함

\* '기준시점'은 대금 변경이 있었던 직전 조정일을 기준으로, '비교시점'은 이번 조정일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음

(예시) 동: ±3% 이상, 경강선재: ±1% 이상

산식 05

납품대금 연동에 따라 조정될 납품대금을 산출하는 산식을 기재

▶ (예시) 변경 단가(원/EA) = 기존 단가(원/EA) + {품목별 변동가격\*(원/Kg) × 품목별 소재중량 (Kg/EA) × 반영비율(100%)}

\* 품목별 변동가격(원/Kg) = 비교시점의 품목 기준가격(원/Kg) - 기준시점의 품목 기준가격(원/Kg)

<sup>\*</sup> 동행기업 모집과 관련한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101호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